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Corporations

박 노 일*
Park, No-II

목 차

- I. 서론
- II. 외국의 입법례
- III.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시스템 현황
- IV.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방향

국문초록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요구도 이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제도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을 들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법률적인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 경영활동 및 기업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한 일련의 경영활동 프

논문접수일 : 2013.09.28

심사완료일 : 2013.11.07

게재확정일 : 2013.11.08

* 법학박사·건국대학교

로세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1992년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보고서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의 개념 및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

COSO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통제시스템은 크게 (i) 업무의 효율성 제고 (ii)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iii) 관련법규의 준수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며, 이는 업무분야, 회계분야 및 준법분야의 3영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사후적 제재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적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외국에서는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도입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

주제어 : 내부통제시스템, 준법지원인, COSO보고서, 사전예방적 규제

I. 서론

1. 내부통제시스템의 개념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COSO¹⁾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통제시스템이란 (i) 업무의 효율성 제고, (ii)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iii) 관련법규의 준수라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경영자,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업내부의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있고.²⁾ 일본의 2002년 개정감사기준에서는 “재무정보의 신뢰

1)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의 약칭으로서 1985년에 SEC위원장이었던 James Treadway에 의해 조직된 '허위회계보고에 관한 위원회' (통칭 'Treadway 위원회'라 함)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8년에 5개의 단체(미국공인회계사협회, 미국회계학회, 재무담당 경영자협회, 내부감사인협회 및 전미회계인협회(그후 회계관리협회))로 설립된 조직이다.

성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관련법규에 대한 준수를 촉진할 목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기업내부의 관리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정의에 의하면 내부통제제도는 기업경영의 효율성,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성, 법규에 대한 준법성을 확보·제고할 목적으로 경영자에 의해 구축·운영되고 있는 기업내부의 일종의 자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 내부통제시스템의 발상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2년 발표된 COSO 보고서는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

2002년 미국에서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 of 2002: SOX법)의 제정을 계기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3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감법상의 제도로서 도입되었고, 동제도와 함께 금융기관의 준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 금융법상의 제도로서 이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던 ‘준법감시인제도’와 그리고 2011년 일반상사회사의 준법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부분 COSO보고서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⁵⁾ 큰 논란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은 COSO 보고서의 개념정리에 따라 회계분야, 업무분야 및 준법분야의 3영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1992: 권중호,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한국기업법학회, 2011), 127면.

3) 권중호, 전계논문, 128면.

4) 김병연,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4호(한국기업법학회, 2006), 275면; 정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내부통제: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법학연구」(2011), 270면.

5) 권중호, 전계논문, 128면; 김병연, 전계논문, 275면; 성희활,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타당성 고찰”,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인하대학교, 2009), 184면; 김대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감시의무”, 「상사판례연구」 제12집(2001), 254면.

2. 내부통제시스템의 생성과 변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는 중세 영국의 장원(莊園)에서 소유하고 있는 양(洋)의 수가 장부에 기록된 수와 일치하는 지를 검사하던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조직 내에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던 것으로 회계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루어져 왔다.⁶⁾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기업측면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국가는 미국이다. 최초에는 감사업무의 회계분, 특히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의 영역에서 시작되었다.⁷⁾ 미국에서 내부통제가 입법화된 것은 1977년 제정된 '해외부정거래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의 성립에 의해서이다. 동 법상 내부통제는 '내부회계통제'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업 경영을 고려할 때 기업의 부정을 회계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내부통제가 단순히 회계적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고 업무영역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⁸⁾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의 증가, 사회책임투자의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부터이다.⁹⁾ 종래 기업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내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곧 기업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고,¹⁰⁾ 그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사후적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규제라는 점이 기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게 된 것이다.¹¹⁾

6) 町田鮮弘, 「内部統制の知識」(日經文庫, 2009), 14-15面.

7) 권종호, 전제논문, 128면.

8) 町田鮮弘, 前掲書, 47-48面.

9) 박관훈,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경제법연구」 제8권 제1호(2009), 36면.

10) 상계논문, 37면.

11) 상계논문, 41-42면.

II.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내부통제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적 의미의 내부통제시스템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최초에는 감사업무의 회계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된 제도가 이후 회사운영 전반에까지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우 1992년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COSO)'에서 공표한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이하 'COSO 레포트'라 함)'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¹²⁾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보고서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회계적 부분, 업무적 부분과 준법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세계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엔론사나 월드컴사 등의 재무부정사건을 계기로 2002년에 경영자에 의한 재무보고에 관하여 내부통제 유효성의 평가 및 회계사에 의한 증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베인스-옥슬리스법(Sarbanes-Oxley Act of 2002, 이하 'SOX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 FCPA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미국에서 내부통제가 최초로 법제화된 것은 1977년 '해외부정거래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의 성립에 의해서이다. 1970년대 발각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SEC는 기업의 정치헌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 그 결과 450개사 이상의 미국기업이 해외 정부관계자 및 정치인에게 거액을 증뢰하였고, 그 총액이 4억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¹³⁾ 이에

12)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Two Volumes Edition, 1994.

미국정부는 34년 증권거래소법의 수정법으로서 1977년에 FCPA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적절한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의 유지를 행하지 않는 것을 위법행위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회계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감사절차보고서 54호의 회계통제규정을 성문화하였으며, 이로써 회계통제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이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에 있어서 연방법에 의한 요건이 되었다.¹⁴⁾

FCPA법은 직접적으로 미국기업에 의한 해외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 부정행위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공무원 및 정당 등에 금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¹⁵⁾ 동 법은 크게 회계관련 조항과 뇌물관련 조항으로 구분된다. 회계조항의 경우 상장기업에 대해 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거래를 행하고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서류를 작성할 것, 또 자산에 대한 설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의해 거래를 기록할 것, 적절한 '내부회계통제시스템'을 책정하여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동 법에서 뇌물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회계조항도 함께 둔 이유는 기업의 회계처리 및 내부회계통제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에 의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의 증뢰에 이용될 수 있는 비자금 조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⁶⁾

(2) 2002년 SOX법

미국의 경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엔론사, 월드컴사 등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공시를 개선시키며, 회계부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SOX법을 제정하였다.¹⁷⁾

13) 町田鮮弘, 前掲書, 47面.

14)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 13 (b).

15) 양만식,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책임과 현상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5권 제1호(2011), 251면.

16) 町田鮮弘, 前掲書, 47面.

17) 강희갑,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감사에 관한 최근의 개혁입법”, 「상사법연구」 제21권 4호(2003), 125면; 안수현, “회계제도개혁법의 입법 현황과 실무상 몇 가지 고려점”, 「증권

2000년에 들어와 미국에서는 엔론사가 회계부정사건으로 파산하고, 외부감사인이었던 아더 앤더슨도 폐업을 하는 등 대규모 기업관련 부정행위 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내부통제의 강화 필요성과 감사인의 독립 및 엄격한 행동규범을 입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¹⁸⁾

이러한 인식하에 미국에서는 엔론사건이후 신속한 입법작업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불과 8개월만인 2002년 7월 30일에 의회에서 메릴랜드주 출신인 Paul Sarbanes 상원의원과 오하이오주 출신인 Michael Oxley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Sarbanes-Oxley Act(이하 'SOX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¹⁹⁾

SOX법은 기업지배구조와 회계개혁과 관련하여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통제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둔 규정은 제302조의 재무보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제404조의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와 관련한 규정이다.

(3)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의 제정

1991년 미국 연방의회 사법부소속 독립위원회인 연방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은 종전에 비해 회사에 대해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벌금액을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²⁰⁾ 구체적으로 법령준수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갖추어진 경우 형사책임을 최고 95%까지 감면하는 등 형사책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²¹⁾

동 가이드라인에서 형벌을 경감시키는 요소로서 (i)효과적인 법령준수프

법연구, 제4권 2호(2003), 231면.

18) 赤堀勝彦, "内部統制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日本版SOX法對應時代に問われる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重要性について", 『神戸學院法學』第37卷 第2号(2007.12), 168면.

19) 동법은 신속한 입법의 필요성 때문에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과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상세하게 비교검토하지 않고 중요한 요소들을 발췌하여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으로서 조문의 일부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20) 상계논문, 177면.

21) 권중호, 전계논문, 130면.

로그램,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출 것 (ii) 자기신고(자수) (iii) 수사에 대한 협조 (iv) 범행행위의 자백을 정하고 있다.²²⁾ 또한 위 (i)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가지 단계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경우 형량을 경감해주고 있다.

2. 일본의 입법례

2005년에 개정되어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²³⁾ 회사법은 모든 대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 것 등, 회사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의 기본방침에 대해 이사회가 결정 또는 결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제348조 4항, 362조 5항).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방침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의미한다는 점은 분명하다.²⁴⁾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 상법개정의 경우 위원회설치회사에 한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두도록 하던 것을 회사법에서 승계한 것이다. 즉, 2002년 개정된 구 상법의 경우 위원회등설치회사에 대해서만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신회사법은 모든 대회사²⁵⁾에 대해서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의 결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한편 2006년 제정된 금융상품거래법도 미국의 Sarbanse-Oxley법의 영향을 받아 재무서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내부통제보고서제도이다.²⁶⁾ 내부통제보고서제도란 상장회사 등에 대해 사업연도마다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등 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에 대하여 연결베이스로 경영자에 대한 평가를 기재한 보고서, 즉 내부통제보고서를 유가증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두 제도는 일본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의미

22) 廣関 暲, 前掲論文, 177면.

23) 신회사법의 시행일은 2006년 5월1일이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에 관한 이사회결의는 회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까지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24) 小林秀之, 「内部統制と取締役の責任」(學陽書房, 2007), 14面.

25) 대회사란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가 200억엔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6) 小林秀之, 前掲書, 16面.

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 회사법상 내부통제제도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업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 다시 말해서 '내부통제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²⁷⁾의 전결사항으로 하고 있다(제362조 제2항 6호). 따라서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 모든 주식회사는 반드시 이사회결의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⁸⁾ 구 상법의 경우 위원회설치회사에 한해서 내부통제제도의 결정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법은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대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의 결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동조 제5항).

그러나 대회사 이외의 감사설치회사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을 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의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으며 따라서 내부통제제도의 필요성은 모든 회사에 다 있기 때문이다.²⁹⁾

한편, 회사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도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³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라고 할 수 있다.³¹⁾

또한 회사법은 단체인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회사 및 자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종전 상법과는 다른 특색이다.³²⁾

27) 이사회비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회사법 제362조 2항).

28)鈴木克昌, 「會社法・金商法下の内部統制と開示」(商事法務, 2007), 32면.

29)小館浩樹 外, “會社法における内部統制システムの構築”, 「商事法務」第1760号(2006), 44면.

30)相澤哲 外, 「論点解説新・會社法」(商事法務, 2006), 334면.

31)권중호, 전계논문, 134면.

32)小林秀之, 전계서, 15면.

(2) 금융상품법상의 내부통제제도

2006년 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상법'이라 함)은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강화 등에 관하여 제도적인 준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특히 상장회사 등의 기업 내용의 공시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의 보고, 사반기 공시,³³⁾ 경영자에 의한 확인서의 제출 의무화,³⁴⁾ 조직재편성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한 공시³⁵⁾를 들 수 있다.

그 중 내부통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내부통제보고제도는 일본판 SOX법이라고 할 수 있는 J-SOX로 알려져 있는 제도이다. 최근 정보공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의 원인이 기업의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가 유효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하에서 마련된 제도로써, 종래 증권거래법하에서 재무제표감사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졌던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 경영자에 의한 내부통제의 유효성 평가와 보고 및 당해 보고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를 재무제표 작성·감사와는 별도로 요구하여 종래 증권거래법상의 기본적 구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경영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³⁶⁾

33) 사반기공시는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가 심한 상황에 맞춰 미국 등의 공시실무 및 증권거래소에 있어서 적시공시 등을 고려하여, 종래 증권거래법 하에서 유가증권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의해 반년마다 행하였던 계속공시를 상장회사 등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보고서와 사반기보고서에 의한 분기마다 계속공시를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34) 경영자확인서의 의무화는 최근 정보공시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자가 유가증권보고서 등에 기재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을 기재한 확인서를 유가증권보고서 등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종래 증권거래법하에서는 경영자의 확인서를 임의로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금상법은 이를 의무화하였다.

35) 조직재편행위에 있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의 조직재편행위에 관하여 행하는 유가증권 발행 또는 교부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등 통상의 유가증권 모집 및 매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까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커다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36) 小林秀之, 전거서, 50면.

Ⅲ.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시스템 현황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제도 및 최근 개정상법에서 도입한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구체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주로 기업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제도는 준법성 확보뿐만 아니라 업무의 유효성, 효율성 제고 등 경영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며 일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준법지원인제도는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회사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³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을 크게 (i) 업무의 효율성 제고, (ii)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iii) 관련법규의 준수의 3가지 분야로 구분할 때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제도와 개정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제도의 경우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법규의 준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내부회계관리제도³⁸⁾라 한다(제2조의2 제1항. 다

37) 권중호, 전제논문, 137면.

38)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원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2003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으로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감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동 법은 미국에서 2002년 SOX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하여 한시

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된다(외감법 제2조의2 제1항).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외감법 제2조의2 제1항 1호 내지 6호). 구체적으로 (i)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ii)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iii)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iv)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 보존 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v)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및 (vi)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라 함)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외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외감법 제2조의2 제2항). 또한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³⁹⁾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외감법 제2조의2 제3항).

회사 대표자에 의해 지정된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하고(외감법 제2조의2 제4항),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

적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대체적인 내용만 규정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및 상장회사 공시통제모범규준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39)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외감법 제2조의2 제5항).

한편,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외감법 제2조의3 제1항).

또한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그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할 수 있다(외감법 제15조의3 제1항 1호). 이는 미국의 SOX법을 본받아 이른바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고발제도는 부정행위의 조기발견에 유익하다. 적절한 내부고발제도의 정비는 경영자·종업원의 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효과적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은행법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되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⁴⁰⁾

이 시기에 내부통제제도와 준법감시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이라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에서 투자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엄격한 도덕성과 신뢰성이 금융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의 확산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⁴¹⁾

준법감시제도가 도입된 법률은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상호신용

40)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박영사, 2011), 141면.

41)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서울파이낸스그룹, 2011), 154면.

금고법, 자본시장법, 증권투자회사법, 증권신탁업법, 선물거래법, 보험업법 등이다. 이들 법률의 경우 모두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과 준법감시인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선물회사만 예외적으로 내부통제기준만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⁴²⁾

이처럼 금융기관의 경우 개별 법에서 그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 업권간 존재하였던 규제격차를 해소하여 금융회사의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다.⁴³⁾

이하에서는 현행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한 개별 법률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험법,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주요내용 및 현재 제정작업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은행법상 준법감시인제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이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임면도 이

42) 성희환, 전계논문, 187면.

4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5일에 국무회를 통과하였으며, 2012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조선일보 2012년 6월5일자 참조).

사회의 결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볼 때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⁴⁾

또한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으로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 등), 내부통제조직의 적정성(감사위원회 및 동 보조조직(검사부서) 기능의 적정성 등),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적정성(업무 분장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 금융사고 예방기능의 적정성(금융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 등), 자체감사업무 운영의 적정성(자체감사시 영업점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중점검사의 적정성),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준법감사인 임면 절차의 적정성 등), 법규, 정책 및 감사지적사항의 이행실태(감독규제사항의 이행실태 등) 등이 해당한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의2).

2) 보험업법상 준법감시인제도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9항).

구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①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②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④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임원 또는 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⑦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⑧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44) 정 대, "미국의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와 이사의 의무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402면.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다.

(3) 자본시장법상 준법감시인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은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8조 1항),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제28조 2항).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책임의 명확한 분배와 명확한 책임계통을 설립하는 것이다.⁴⁵⁾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동 법 시행령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절차 및 그 자격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의 의무 및 수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011년 12월 16일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동 법은 은행법상의 지배구조에 근간을 두고 법의 체제를 구성하였으며,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를 포괄하는 내용이다.⁴⁶⁾

1999년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였던 우리나라는 2003년 들어 금융부문 구조개혁을 위해 통합 금융법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⁴⁷⁾,

45) 한국증권법학회, 전거서, 142면.

46) 원동욱, "금융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2.4), 1면.

47) 김용재, "가칭 통합금융법논의에 대한 비판", 「금융법연구」 제1권 제1호(한국금융법학회, 2004), 135면.

이에 따라 우선 금융업종 간 지배구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통일된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었다.⁴⁸⁾

(5) 상장회사 준법지원인제도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상법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준법지원인제도이다.

개정상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542조의13 제1항). 준법지원인 제도는 원래 정부가 제시한 상법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다. 2004년 9월 20일에 있었던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상장기업의 법무담당자 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후 2004년 10월 4일 제2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내 법률전문가 제도의 도입이 포함된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법률전문가를 두고 상시적으로 법적 문제에 대한 점검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법개혁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제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내 법률전문가인 '준법관리인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었다.⁴⁹⁾

물론 당시에 동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준법지원인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감사 등의 권한과 역할이 중복됨에 따라 법 시행 전부터 중복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⁵⁰⁾

48) 원동욱, 전제논문, 15면.

49) 권성연, "준법지원인제도의 현재와 미래", 「지스티스」 제127호(2011), 81면.

50) 홍복기, "개정상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상장협연구」 제64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1), 27면.

또한 개정상법은 준법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과 동시에 시행령 제정시 기타 법률 전문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⁵¹⁾ 최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일단락되기는 하였지만 준법감시인의 법적지위 및 업무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⁵²⁾

Ⅳ.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방향

1. 내부통제시스템의 통일적 정비

(1) 명칭의 통일

개정상법에서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금융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준법감시인과의 관계였다. 당시 준법지원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준법감시인과 기능의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⁵³⁾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이유는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을 별개의 제도로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법감시제도나 준법지원인제도나 모두 내부통제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그 범위가 준법영역과 업무영역에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될 뿐이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의 도입이 금융기관에는 있으나 상장회사에 없었던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준법지원인의 역할은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⁵⁴⁾

51) 전삼현, “기업준법통제제도의 개선과제”, 「상장협연구」 제64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1), 87면.

52) 이철승, 「2011 개정상법 -축조해설-」, (박영사, 2011), 256면.

53) 최승재, “회사통제기관의 재구성”, 「상장회사감사회회보」 제117호(2009), 8면.

이렇게 본다면 양자의 명칭을 굳이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양자의 명칭을 구분함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이에 따라 그 업무영역에 중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장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명칭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적용대상 회사의 통일

내부통제시스템은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상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⁵⁴⁾ 따라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들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다만, 갑작스럽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완충적인 도입이 필요한 점도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도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를 최초로 위원회설치회사로 하였다가 대회사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분야인 회계분야가 적용되는 대상과 업무영역 및 준법영역이 적용되는 회사를 달리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는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이고, 상법상 준법지원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이다. 이처럼 양 제도의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단지 별도로 도입됨에 따라 통일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대상회사가 이렇게 구분될 이유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통일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3) 적용 법률의 통일

54) 권종호, 전제논문, 148면.

55) 박관훈,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경제법연구」 제8권 1호(2009), 42면.

내부통제시스템은 종합적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편이상 회계분야, 업무분야, 준법분야로 구분하였지만 실제 회사운영에 있어서 이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회계분야에서의 부정과 업무분야에서의 부정이 동시에 나타나며, 또한 준법분야의 문제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명칭 및 적용범위를 통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개별 법률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기본법인 상법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분야별로 현재와 같이 모범규준 등을 제시하여 규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부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정하는 경우 기업측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점을⁵⁶⁾ 고려할 때 이러한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4) 통일적 기준의 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모습은 법률에서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⁵⁷⁾ 따라서 현재와 같이 모범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경우 법률이나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다보니 그 내용도 제각각으로 제정되어 제도간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적인 법률정비를 통해 제도를 정비한 후에는 개별 영역, 예를 들어 금융분야 및 일반기업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56) 권중호, 전제논문, 146면.

57) 김화진·김병연·정준우·곽관훈, 「상장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법제화 및 KRX의 바람직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연구용역보고서(2008), 28-32면.

2. 내부통제시스템 적용대상의 확대

(1) 적용대상의 법적 확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상법상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준법지원인제도를 두어야 하는 회사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에서 이를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상장회사 중 절반 이상인 회사가 적용대상이 되므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최초 도입 당시에 제기된 것과 같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제고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히 범위만 확대해서는 안 되고 뒤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해당기업이나 임직원이 일정한 형이상의 선고를 받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방안이다.⁵⁸⁾

이 경우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서, 문제가 없는 건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이들 제도를 피하기 위해 위법행위가 억지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간접적 강제를 통한 적용대상 확대

58) 권성연, “준법지원인제도의 현재와 미래”, 「저스티스」 제127호(2011)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 회사법은 대회사 및 위원회설치회사에 대해서만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외의 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⁵⁹⁾ 일본에서는 회사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먼저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⁶⁰⁾ 따라서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구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경우 이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법상 적용대상 회사가 준법지원인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민사적 차원에서 경영진의 주의의무위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진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판례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이사의 의무로 보고 있다는 점을⁶¹⁾ 고려하면 일본의 경우와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즉, 상법상 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아니어도 당연히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상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대상 회

59) 小林秀之, 前掲書, 49面.

60) 朴관훈, 전계논문, 44면.

61) 대법원 판례는 주식회사 대우의 이사책임과 관련한 판례에서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 바, 주식회사 대우와 같이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사, 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2008.9.11. 선고 2007다31518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판결.

사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기준만 제시한 채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성을 경영자가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⁶²⁾ 이 방식을 택하는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미구축이 곧바로 이사의 책임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실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자사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내부통제의 수준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⁶³⁾

3. 준법지원인등의 역할 제고 및 책임의 명확화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법성, 유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진과의 협의 및 지시 하에 각 영업부서별 리스크 분석, 모니터링, 통제 및 적절한 감시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존재이다.⁶⁴⁾ 다시 말해서 경영자에 대한 감시자가 아니므로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있어서도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만을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진을 보조하여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준법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이해, 경영 경험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학제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요구되며 법률전문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⁶⁵⁾ 따라서 향후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감사와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준법지원인의 경우 경영진을 보조하여 회사의 경영시스템을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감사의 경우는 이러한 경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

62) 권종호, 전제논문, 147면.

63) 상계논문, 147면.

64) 성범규, “준법지원인 도입으로 본 내부통제체계”, 「상장회사감사회회보」 제148호(2012.4), 15면.

65) 신석훈, “개정상법상 준법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ERI Insight」, 11-11(한국경제연구원, 2011), 9-10면.

어 회사의 업무가 유효하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사, 평가 진단하며 필요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존재이다.⁶⁶⁾

또한 감사의 경우 회사이익을 침해하는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기관으로서 사후적인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에 비해 준법지원제도는 사후적인 감독 못지않게 교육, 연수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으로 지적되고 있다.⁶⁷⁾ 따라서 감사와 준법감시인은 그 역할에 있어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4.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업이 준법지원인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적책임에 대한 경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책임을 부과할 때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기업들이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형사적 인센티브

형사적 측면의 인센티브 부여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미국 연방양형기준의 예가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미국연방양형기준과 같이 회사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차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을 상당정도 경감해주는 것이다⁶⁸⁾.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에

66) 성범규, 전제논문, 15면.

67) 원동욱, “내부통제업무 관련 준법감시인의 지위”, 「기업법연구」 제22권 1호(2008), 263면.

68) 권성연, 전제논문, 99면.

해당하는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⁶⁹⁾ 또한 대법원이 제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에 포함시켜 형을 경감 및 작량감경사유로 보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행정적 인센티브

기업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때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었는가에 따라 그 처벌 수위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⁷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이러한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준법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CP를 평가하여 일정한 수준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program)과 같은 인센티브제도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⁷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도 CP나 리니언시 제도와 같은 차원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민사적 인센티브

69) 甲斐克則, 「企業活動と刑事責任」(2008), 20面: 곽관훈, 전계논문, 176면에서 재인용.

70) 곽관훈, 전계논문, 175면.

71) 손영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4권 제2호(2010), 285면 이하 참조.

민사적 인센티브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는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04년 동방페레그린증권 관련 사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⁷²⁾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었는가에 따라 그 배상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기업들에게 커다란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단행본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2011.

김건식, 「기업지배구조와 법」, 소화, 2010.

이철송, 「2011 개정상법 -축조해설-」, 박영사, 201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2.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2.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2011.

- 논문

곽관훈,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경제법연구」 제8권 제1호, 2009.

72) 대판 2004.12.10, 2002다60467, 60474. 권성연, 전제논문, 101면.

- 곽관훈, “회사법적 측면에서 본 기업범죄 예방”, 「강원법학」 제32권, 2011.
- 권성연, “준법지원인제도의 현재와 미래”, 「저스티스」 제127호, 2011.
- 권종호,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 권종호, “2011년 개정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의의와 과제”,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1.
- 김대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감시의무”, 「상사판례연구」 제12집, 2001.
- 김병연,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 김화진·김병연·정준우·곽관훈, “상장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법제화 및 KRX의 바람직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연구용역보고서, 2008.
- 서완석,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 2010.
- 성범규, “준법지원인 도입으로 본 내부통제체계”, 「상장회사감사회회보」 제148호, 2012.4.
- 성희활,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타당성 고찰”,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인하대학교, 2009.
- 손영화, “내부통제의 개시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1권 4집, 2010.
- 양만식,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책임과 현상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1.
- 원동욱, “내부통제업무 관련 준법감시인의 지위”,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8.
- 정 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내부통제: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법학연구」, 2011.
- 정 대, “미국의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와 이사의 의무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2005.
- 최승재, “회사통제기관의 재구성”, 「상장회사감사회회보」 제117호, 2009.

【외국문헌】

- 일본문헌

町田 鮮弘, 「内部統制の知識」, 日經文庫, 2009.

赤堀勝彦, “内部統制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日本版SOX法對應時代に問われる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重要性” 佐藤丈文・太田洋, “米企業改革法とNYSE・NASDAQ新規則案の概要(上)”, 「商事法務」 第1639号(2002)について”, 「神戸學院法學」 第37卷 第2号, 2007.12.

小林秀之, 「内部統制と取締役の責任」, 學陽書房, 2007.

赤堀勝彦, “内部統制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日本版SOX法對應時代に問われる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重要性について-”, 「神戸學院法學」 第37卷 第2号, 2007.12.

甲斐克則, 「企業活動と刑事責任」,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Corporations

Park, No-II

Ph.D in Law · Konkuk University

The aim of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 in the present day is deterrence role to an enterprise's unlawful act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f the enterprise don't fulfill his duties, administrative authorities can't achieve the goal of acts.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prepared variety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achievement the goal of acts and overcoming problems of an enterprise's unlawful act. However It is ineffective to

deterrence role to an enterprise's unlawful act, because corporation have been observed the regulations on it's own initiative. Internal control system lead that corporation observe law on it's own hook. In other words, internal control system is the paradigm shift of regulations on corporations.

Internal control system is broadly defined a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1)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2)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3)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ternal control can help an entity achieve its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targets, and prevent loss of resources. It can help ensure reliable financial reporting. And it can help ensure that the enterprise complies with laws and regulations, avoiding damage to its reputation and other consequences.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ill take a look at the problems of internal control system in our nation. And then I would like to explore how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Key words : Internal control system, Compliance, corporation,

